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1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의의	4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10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6
1. 제명, 목적	16
2. 정의	17
3. 국가의 책무	19
4.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0
5.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 설치 등	23
6. 위원회의 활동기간,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25
7.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보고서의 작성	28
8.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29
9. 보상금등의 신청, 심의·의결 등	32
10.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보상금등의 환수	36
11. 시효	40
12.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등	41
1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등	42
14.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48
15. 심리상담 등 지원, 추모사업 등, 추모재단 설립	49
1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5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엄태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5. 11.
3. 회 부 일 : 2026. 5.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단양 곡계굴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전투폭격기 등에 의한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약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67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진실규명을 한 바 있음.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희생자 결정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위원회 업무의 심의·의결을 완료하되, 이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효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

급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 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아.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함(안 제36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의의

단양 곡계굴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전투폭격기 등에 의한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사건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조사에 착수하였고, 2008년 5월 본 사건은 미군의 네이팜탄 폭격과 기총사격으로 인해 비전투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며, 200명을 상회하는 전체 희생자 중 총 167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는 진실규명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¹⁾

《 단양 곡계굴사건 개요 》

- ◆ 발생 일시: 1951년 1월 20일 오전(10시~10시 30분부터 2~3시간 지속)
- ◆ 발생 장소: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소재 곡계굴 및 인근 용진리·하리 일대
- ◆ 사건의 배경 및 경위
 - 중공군 개입과 방어선 돌파: 1950년 후반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중부전선 소백산맥 지대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제천·단양·풍기 방향의 주공급로를 위협함
 - 미군의 피난 차단 및 봉쇄: 1951년 1월 7일, 미10군단 예하 부대는 인민군이 피난민 대열에 위장 잠입할 것을 우려하여 가곡면 향산리 근방의 도로를 탱크로 봉쇄하고 피난민의 통과를 저지함
 - 자구책으로 곡계굴 대피: 별도의 보호 조치 없이 되돌아온 상리 주민들과 외지 피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막히자 안전한 피난처로 알려진 곡계굴로 숨어들음

1) 진실화해위원회,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2권, p.256.

- 무차별 소각·공격 작전: 미10군단은 북한군 침투지역에 과도할 정도의 대대적인 공중공격과 소각작전을 계획함. 사건 당일 미7사단 17연대의 요청에 따라 미6147전략통제단 정찰기의 인도 하에 미5공군 예하 전투 폭격기들이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함

♦ 피해 상황 및 특징

- 희생 원인: 굴 내부에 있던 피난민들은 네이팜탄 폭격으로 인해 대부분 불타거나 유독가스로 질식사하였고, 폭격을 피해 굴 밖으로 뛰쳐나온 이들은 기총사격에 의해 희생됨
- 희생자 규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전체 희생자는 무연고자를 포함하여 2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현재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67명임

♦ 사후조치 및 진실규명

- 폭격 약 1주일 후 미군이 찾아와 폭격 상황과 민간인 희생 사실을 조사하고 사진 촬영을 해간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나 보호가 없었음
-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체계적인 피난 조치나 민간인 보호책을 마련하지 못함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작성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미국이 본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적극 협상에 나설 것과, 희생자 및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비 건립 등 화해조치,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각종 공식기록물에 올바르게 등재할 것 등을 권고하였음.²⁾

그러나,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2) 진실화해위원회, 앞의 보고서, p.322

일반적인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 등은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군이므로,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라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이를 통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제20대 국회 당시 권석창의원 대표발의로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2020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실회복과 장기간 보상 지원,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임.

또한 충북 지역의 또 다른 미군폭격 사건인 노근리사건의 경우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심사를 통해 의료지원금 등이 지급된 것과

비교할 때, 단양 곡계굴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의 경우 이와 같은 조치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제정안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제정안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근리사건 등 유사 과거사 사건 관련법도 의료지원금만 지급하고 있을 뿐 보상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동 사건과 유사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³⁾ 개별 사건들에 대해 일일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보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유사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 관련 로드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진행경과를 함께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수는 314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68건, 미군에 의한 희생사건은 43건에 달함.

《 행정안전부 과거사 문제해결 관련 연구용역 개요 》

- 용역명: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해결 로드맵 연구
- 용역비: 6,000만원
- 용역기간: 2026년 5월~9월 예정
- 수행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한편, 2025년 8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26.)에서 과거사 문제를 매년 개별 사건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룰 것인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개별 사건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이 지적된 바 있음.⁴⁾

또한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을 규정하는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제22대국회 제428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2025.8.26.)

○박수민 위원: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과거사를 다루는 포괄주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개별 사건별로 개별법을 하는 개별주의로 가는 것인지? 이거는 국가가 이런 근대사의 비극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어떤 원칙적인 걸 좀 정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국내든 국외든 그동안 다뤄 왔던 건 진화위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상 문제로 가고 그 시행착오와 경험이 거기에 다 진화위에 녹아 있을 텐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필요성과 효과성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간하게 보는 면은 이게 법이 통과되면 별도의 위원회 설치되는 거지요? 사무국 설치되는 거지요? ... 그러면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조직이 생겨지는데 사실은 진화위에서 그 비용을 써서 연구용역을 더 충실히 하고 거기서 또 그 재원 갖고 저희가 보상할 분들이 생기면 더 보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공조직만 커져서 피해자들 진실규명이나 보상으로 갈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별도 조직이 생기면.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조지연의원안 (2026.4.2. 발의)	▶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결정하고자 함(안 제3조). ▶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는 조세를 면제함(안 제12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통해 이들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진하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해당 사건은 미군에 의한 희생사건으로서, 법안의 핵심 내용이 희생자에 대한 보상임을 감안할 때, 국가배상체계와의 정합성,⁵⁾ 그간 소송 결과⁶⁾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법무부 등)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5) 그간 과거사 배·보상은 폭력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전보(填補)하는 의미로 추진됨.

6) 진화위 진실규명 관련 소송사례집(2025)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있어 대한민국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14562 판결(손해배상) >

- ✓ (개요) 노근리사건 유족 중 일부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SOFA협정('66.7.9. 제정)의 후속조치인 「주한미군민사법」('67.3.3. 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1950.7.25.~7.29. 발생 노근리사건에 대하여 적용 불가
 - 같은 법 부칙에서 법 시행 전 손해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미국정부에 대해서만 배상청구 가능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보상을 제외한 잔여 명예회복 방안을 현행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법”)」과 같은 형태로 입법화하더라도,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이 다수 존재함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인 사건별 입법보다는 통일적인 명예회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유사 사건을 포괄하는 통합 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⁷⁾

또한 기획예산처는 과거사에 대한 국가보상 여부는 사건발생 경위, 국가·외국기관의 관여 정도, 기존 배상·지원제도 적용 여부, 재정여건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본칙 38개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7) 앞서 검토한 것처럼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과거사 문제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연구용역을 추진(2026.5.~9.)하고 있으므로, 관련 진행경과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의 체계 》

구분	조문		주요 내용
본문	제1조	목적	-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해 보상
	제2조	정의	- ①단양 곡계굴사건, ②희생자, ③유족에 대하여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 책임을 인정하고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 -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 위해 노력
	제4조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	자문기구	-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자문기구 설치 가능
	제6조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곡계굴사건 희생자 보상실무위원회 설치
	제7조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제8조	위원회 활동기간	- 위원회는 3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 완료 -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연장 가능
	제9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결정 등을 위해 증언,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가능
	제10조	불이익 처우 금지	- 누구든지 사건 관련 진술 또는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함
	제11조	심사보고서 작성	- 활동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보고서 의무 작성
	제12조	보상금	- 희생자의 일실회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사망 또는 행방불명: 9천만원 / 후유장애: 장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9천만원 이하 -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권 공유
	제13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희생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할 경우 지원
	제14조	보상금 신청	- 보상금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 통지를

구분	조문	주요 내용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제15조	심의·의결	-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결정
제16조	결정서 송달	-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준용
제17조	재심의	- 이의가 있는 희생자자와 유족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
제18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신청 시 결정 동의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
제19조	보상금 지급받을 권리 보호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제공·압류 금지
제20조	조세 면제	-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지방세 면제
제21조	결정전치주의	- 보상금 지급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 제기 가능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예우, 지원을 받는 경우 미적용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경우 차감 지급 - 보상금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 시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성립(정신적 피해 예외)
제23조	보상금 환수	- 국가는 일정한 경우 기 지급한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
제24조	시효	- 보상금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 지급소송 제기한 경우 제기한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 정지
제25조	희생자 및 유족 권익 보호	- 희생자나 유족 비방 목적으로 조사결과 부인·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금지
제26조	관련 법인 지원	-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사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27조	가족관계등록부	-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구분	조문	주요 내용
	작성·정정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및 기록 정정 가능
제28조	실종신고 청구 특례	- 위원회는 행방불명 결정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신고 청구 가능, 법원 선고 확정 후 실종신고 신고 가능
제29조	인지청구 특례	- 국계굴사건으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 이내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가능 -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 가능 -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 제기 가능
제30조	혼인신고 특례	-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 가능 -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 가능 ※ 이 경우 희생자의 사망일·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봄
제31조	입양신고 특례	-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 가능 ※ 이 경우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봄
제3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심의·의결, 처리에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포함 자료 수집·이용·처리 가능
제33조	위원회 활동 보호	- 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 구성원 등 폭행, 협박 등으로 직무수행 방해 금지 - 희생자·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의무 강구 - 위원회 위원이나 직(職)에 있었을 경우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제34조	심리상담 등 지원	- 희생자 및 유족의 심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제35조	추모사업	-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며, 이 경우 희생자

구분	조문		주요 내용
			및 유족의 의견 존중
	제36조	추모재단 설립	-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추모재단(법인) 설립 ※ 추모사업에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무상 양여 가능
	제37조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 공무원 아닌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과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제38조	벌칙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위원회 직원 등의 직무집행 방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회 위원이나 직(職)에 있었던 자의 비밀 누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칙	제1조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법률 시행
	제2조	준비행위	- 위원 위촉 등 설립준비는 법 시행전 가능
	제3조	위원 임기 개시 특례	- 최초 임명·위촉 위원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둘째,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

셋째,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넷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회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섯째,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하부터는 조문별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목적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제명을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여,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있음.

다만,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앞서 검토한 것처럼 유사 과거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사건에 대한 보편적 보상법안 제정 추이도 참고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안의 핵심 내용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임을 감안할 때, 국가배상체계와의 정합성, 그간 소송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법무부 등)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진실규명결정 사건에 대한 보편적 보상 관련 법률안의 입법 경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양 곡계굴사건”이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 등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정안은 “단양 곡계굴사건”을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 등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희생자”를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하고,

“유족”을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으로 하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 안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이는 본 사건과 희생자, 유족 등의 범위를 정의 규정을 통해 구체화·명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정의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건,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희생자심사"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건의 역사적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과거사 보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희생자의 사망·행방불명·상이 여부, 상속관계, 후유장애 정도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곡계굴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단양 곡계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조치 시행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단양 곡계굴사건의 경우 미국 군인의 공중폭격에 의해 민간인 피난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점, 「노근리사건법」에도 국가 책임 인정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⁸⁾

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

4.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위령탑 건립 등 추모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4. 단양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8.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을 제00000호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0000년 0월 0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단양 곡계굴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사건 관련 피해의 신고기간과 신고처를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노근리사건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보상심의분과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앞서 검토한 것처럼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는 유사 과거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근거한 보편적 보상법안의 제정 추이도 참고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 위원회, 자문기구의 설치 등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금 등 지급 규정의 타당성 여부와 연계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6조(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신청접수와 조사에 관한 사항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실종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의결·위임한 사항을 실행·처리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와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의결·위임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업무분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도 있어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실무위원회의 설치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실무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신청접수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앞서 검토한 것처럼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는 유사 과거사 입법례와의 형평성과 함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근거한 보편적 보상법안의 제정 추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타 과거사 실무위원회와 달리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와 연계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위원회의 활동기간,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심의·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실종선고의 청구,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단양 곡계굴사건이 발생한 현장조사를 포함한다) 등을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주민등록자료·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단양 곡계굴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보상금 지급 등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의무와 함께 동 사건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제1항의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과거 「노근리사건법」이 최초 활동기간을 법 시행 후 1년(2004.6.6.~2005.6.5.)으로 하였다가, 법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후에도 희생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법을 전부개정하여 1년의 기간(2022.4.20.~2023.4.19.)을 추가로 부여한 점을 참고할 때, 위원회의 최초 활동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위령탑 건립 등 추모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완료 시한의 예외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를 완료 시한의 예외로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이나, 이것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이 완료된 후에도 추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의도한 것인 경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후술할 안 제36조가 추모재단을 설립하여 추모사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불이익처우 금지 등의 규정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등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불이익처우 금지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관한 결정,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

		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불이익처우 금지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주4·3 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7.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보고서 작성

제11조(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정안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객관적·효율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위원회의 조사 완료 후 그 과업 완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

련된 규정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작성기획단 구성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보고서 작성, 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운영 등	제9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8.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12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회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 9천만원, 후유장애의 경우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중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앞서 검토한 것처럼 가해자가 미군인 본 사건의 특성상,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라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이를 통한 배상을 받지 못한 희생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상금 등의 지급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유사 과거사 입법례인 「노근리사건법」도 의료지원금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금등의 지급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보상금 지급 시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사건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상법안의 제정 추이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노근리사건법」의 의료지원금 규정 》

구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료지원금	제10조(의료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간병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사건의 희생자에 대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타 입법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사건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상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기획예산처는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방식은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 비교하여 보상 필요성,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검토가 필요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보상은 보도연맹, 거창, 산청·함양 사건 등 다수 사건으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 등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보상금등의 신청, 심의·의결 등

제14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신청은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심의·의결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의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①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전치주의) ①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보상금등의 신청과 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정서 송달과 재심의 신청, 신청인의 동의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보상금등

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등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신청과 위원회의 지급 결정, 신청인의 동의와 그 지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절차를 명확히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보상금 등의 지급 규정의 타당성 여부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상금등의 신청, 심의의결, 결정서 송달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보상금등의 신청, 심의의결, 결정서 송달 등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심의의결 등) ①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심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정전치주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안 제20조의 조세 면제 규정의 경우 위로금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를 지급받은 피해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인정되나, 조세면제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한 법률 등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⁹⁾ 이를 개별법률에 규정하더라도 실제 조세면제가 이루어지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금등의 신청과 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정서 송달과 재심의 신청, 신청인의 동의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등 내용을 규정하려는

9)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이하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하생략)

취지에 공감하나, 보상금 등의 지급 규정의 타당성 여부와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20조 조세 면제 규정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한 법률 등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법안의 제정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10.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보상금등의 환수

제22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단양 곡계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단양 곡계굴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단양 곡계굴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거짓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환수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받지 못한 희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훈급여등이 지급되어 이중보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공자·보훈대상자 보상대상 미포함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유공자·보훈대상자 보상대상 미포함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	---	---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안 제22조제3항의 재판상 화해 간주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유사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¹⁰⁾ 이에 따라 관련 법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 대상에서 정신적 피해 제외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 대상에서 정신적 피해 제외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u>다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7.></u>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10)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21.5.27., 2019헌가17[위헌])

5·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고 있다.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5·18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이 5·18보상법상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한편, 보상금의 부정수급 또는 초과지급이 발생한 경우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강제징수의 방법을 통해 환수하려는 것은,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 입법례도 있어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보상금등의 환수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배·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받지 못한 희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등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부당한 보상금 수령 건에 대한 환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보상금 등의 지급 규정의 타당성 여부와 연계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시효

제2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그 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금전의 급부 등 법률관계의 조속한 완성을 통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시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 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3년의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8조의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시효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보상금 등의 지급 규정의 타당성 여부와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등

제25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단양 곡계굴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단양 곡계굴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금지하고, 단양 곡계굴 사건 관련 법인의 추모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노근리사건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안 제26조의 ‘단양 곡계굴 사건 관련 법인’이 안 제36조의 ‘단양 곡계굴사건 추모재단’과 동일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양자가 동일한 경우 안 제36조에서 추모사업 실시, 재단 운영경비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 제26조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1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등

제27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제적부가 소실되어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2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제29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단양 곡계굴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31조(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

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성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 청구, 인지청구 등 사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민법」과 제정안의 실종신고 규정 등 비교 》

구분	「민법」	제정안
실종신고 청구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침몰선박·추락항공기 탑승자 등이 해당 사건 종료 후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법원은 이 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함(「민법」 제27조)	-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음
인지청구	- 인지청구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가능하나(「민법」 제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법」 제864조) - 「민법」 제864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등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단양 곡계굴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가 안 제27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또는 안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혼인신고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해당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민법」 제812조)	-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음 -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입양신고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민법」 제867조)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	-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음 - 상기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

	아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함(「민법」 제869조) - 양자가 될 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민법」 제870조 및 제871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제외)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음(「민법」 제873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음(「민법」 제874조)	무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	---------------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전쟁으로 제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경우 이를 위원회의 결정으로 작성 및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후 70여년이 경과한 만큼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 등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기왕의 가족관계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유사 입법례도 있어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특례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특례 등	제20조(실종신고 청구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민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실종의 신고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제주4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별도 특례를 규정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해당 규정들이 보상금 등의 지급과 관계되는 것인만큼, 보상금 등 지급 규정의 타당성 여부와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4.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2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각각 제4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 또는 처리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3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희생자·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사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또는 직원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희생자·유족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강구 및 비밀누설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며, 관련 유사 입법례도 있어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6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제15조에 따른 직권 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7조(위원회의 활동보호 및 비밀누설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15. 심리상담 등 지원, 추모사업 등, 추모재단 설립

제34조(심리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리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 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추모사업 등) 국가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모 행사의 거행
2. 위령탑 건립
3. 그 밖의 단양 곡계굴사건 관련 추모 사업

제36조(추모재단 설립) ①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을 추모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양 곡계굴사건 추모재단(이하 “추모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추모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추모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추모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단양 곡계굴사건 추모관 운영

2. 단양 곡계굴사건 추모사업

3.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⑤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추모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추모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재단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추모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심리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추모재단의 설립과 추모사업의 실시 및 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4조가 동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등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관련 유사 입법례도 있어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희생자 및 유족의 심리적 피해 치유 지원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희생자 및 유족의 심리적 피해 치유 지원 등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안 제36조의 추모사업 실시 및 경비 지원 근거조항도 유사 입법례 등을 통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나, 추모재단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36조제1항의 경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추모사업, 관련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념사업 및 예산지원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	

	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사료관 건립 3. 제주4·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관리 4.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3사건 관련 기념사업	
관련 재단 예산지원 등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안 제26조(단양 곡계굴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제35조(추모사업) 및 제36조(추모재단 설립)에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안 제36조제5항이 추모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토지)의 무상 양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유재산이 추모재단에 무상으로 이전될 경우 초래될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자산 관리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추모재단 설립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사례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개별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 타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재단 설립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5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와 「과거사치유재단법안(의안번호 2212908)」 제정안 등 포괄적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된 입법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고,

공유재산 양여는 소유권을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이전 해 주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토지)에 한정하여 양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6.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¹¹⁾을 적용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며, 보상금등을 부정수급한 사람과 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비밀누설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도 있어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제19조(벌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11)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문 의 처

02)6788-5343